

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교육기관 []지정신청서
[]변경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30일	
신청인	기관 명칭			사업자등록번호			
	소재지						
	(전화번호:		팩스번호:		전자우편:		
	대표자			설립 연월일			
신청내역	교육분야	[]식품 등	[]축산물	[]의약품 등	[]의료기기	[]화장품	[]위생용
변경사항	[]명칭 []소재지 []교육분야 []대표자						
	[]수강료 및 그 산정방법 []기타()						
변경내용	변경 전						
	변경 후						
변경사유							

「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,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·검사 교육기관 지정(변경)을 신청합니다.

이
의
의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신청인 첨부서류	1. 시험·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가. 교육기관의 운영 규정 나. 교육 관련 조직 및 인적 현황 다. 교육과정 편성 계획서 라. 강의 인력의 현황 및 확보 계획서 마. 강의실, 시험·검사 장비 및 시설 현황 바. 수강료 및 그 산정 방법 2. 시험·검사 교육기관 변경신청: 시험·검사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	지정신청: 190,000원 변경신청: 95,000원 (전자민원 시 지정신청: 171,000원 변경신청: 85,500원)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명 2. 국가기술자격증 3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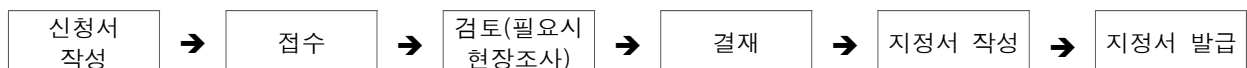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 절차



신청인

식품의약품안전처